

의안번호	제304호
의결 연월일	2015년 12월 일 (제344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5년 11월 2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1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청년정책 업무의 총괄을 위한 분장사무 지정과,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소 명칭변경 등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□ 분장사무 조정 (안제7조, 제8조)

#### ○ 청년정책 업무 신설 : 행정국

-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총괄

#### ○ 고령화, 저출산 관련업무 이관 : 보건복지국 → 행정국

- 청년 복지, 결혼 및 고령화·저출산 대책 수립·지원

### □ 소속기관(사업소) 명칭 변경 (안제8절 제목, 제56조의2)

#### ○ (종전)충청북도서울본부 → (변경)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

- 국회, 정당 등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본부장 업무반경 확대 필요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총괄
17. 청년 복지, 결혼 및 고령화·저출산 대책 수립·지원

제8조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.

제4장제8절의 제목 “충청북도서울본부”를 “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”로 한다.

제56조의2제1항 중 “충청북도서울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보건복지 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행정국) (생 략) 1.~ 15.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 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8조(보건복지국) (생 략) 1.~ 4. (생 략) <u>5. 고령화, 저출산대책 수립 및 지원 에 관한 사항</u> 6. 공공보건, 신종전염병, 지방의료 원에 관한 사항 7.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. 보건, 의무, 방역, 정신 보건에 관한 사항 9. 위생 및 식품·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사업소 제8절 충청북도서울본부</p> <p>제56조의2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 라 중앙행정기관, 국회,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<u>충청북도서울본부(이하 “본부” 라 한다)</u>를 설치한다.</p>	<p>제7조(행정국) (현행과 같음) 1.~ 15. (현행과 같음) <u>16.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 총괄</u> <u>17. 청년 복지, 결혼 및 고령화·저출 산 대책 수립·지원</u></p> <p>제8조(보건복지국) (현행과 같음) 1.~ 4.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 5. (현행 제6호와 같음) 6. (현행 제7호와 같음) 7. (현행 제8호와 같음) 8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사업소 제8절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</p> <p>제56조의2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소속으로 <u>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(이하 “본부” 라 한다)</u>-----.</p>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 ~ ⑥ (생략)

### 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